

第47回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 市民行政委員會會議錄

第1號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5年5月11日(木) 11時 30分
場 所 市民行政委員會室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鍾路區污水·糞尿및 畜産廢水의 處理에 關한 條例中改正 條例(案)
2. 서울特別市鍾路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 條例(案)

審査된 案件

1. 서울特別市鍾路區污水·糞尿및 畜産廢水의 處理에 關한 條例中改正 條例(案)
(金憲中議員 外 4人 發議) 1面
2. 서울特別市鍾路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 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12面

(11시30분 開議)

○委員長 羅在岩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在籍委員 11명 중 出席委員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제 어느새 봄이 다 갔습니다. 여름의 길목에서 돌이켜보면 지난 1991년 4월 15일 개원된 이래 4년여 동안의 마무리에 와 있습니다. 레임덕 현상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충직한 의원 생활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때입니다. 끝으로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성원을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도 자리를 해주셔서 제47회 임시회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나와주신 우리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이 두 건인데 거의가 다 우리 주민들을 위한 실생활에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허술한 점이 없는 서로 질문과 답변이 있어서 토론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면 우선 의안제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議案係長 洪柱喆 議案係長 洪柱喆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7회 鍾路區議會 臨時會 제1차 市民行政委員會 會議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

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서울特別市鍾路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 條例(案)이 1995년 4월 14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4월 1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서울特別市鍾路區污水·糞尿및 畜産廢水의 處理에 關한 條例中改正 條例(案)이 1995년 5월 9일 金憲中議員 外 4인으로 부터 발의되어 1995년 5월 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羅在岩 議案係長!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特別市鍾路區污水·糞尿및 畜産廢水의 處理에 關한 條例中改正 條例(案)(金憲中議員 外 4人 發議)

(11시34분)

○委員長 羅在岩 議事日程 제1항 서울特別市鍾路區污水·糞尿및 畜産廢水의 處理에 關한 條例中改正 條例(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金憲中議員!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憲中議員 金憲中議員입니다. 서울特別市鍾路區污水·糞尿및 畜産廢水의 處理에 關한 條例中改正 條例(案)은 사실상 제가 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인데 이게 이미 작년 7월 30일날 丁昌熙議員

이 발의를 해가지고 나오다가 지금 丁昌熙議員이 바쁘시다고 해서 나한테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나도 어리둥절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따져야 되고 또 우리가 발의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特別市鍾路區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은 1994년 7월 30일 議員 發議로 개정되었는 바 당시 그 취지는 그동안 십수년간을 정화조청소 대행업이 독점 체제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수요자인 시민에게 갖은 횡포와 불이익이 있다는 여론을 수렴하고 경쟁체제의 도입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욕적인 취지로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 종로구에서만 의원 발의로 일대 혁신적인 개정을 한 바 있었으나, 본개정(안)이 정화조청소 행정에 일대 변혁이 초래되는 광역 청소체제인 서울시 여건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집행부 의견이 있어 가지고 당시 본개정(안) 심의 의결 과정에서도 소수의 반대의견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기본 개정 취지는 유지하되 일부 강제규정 등을 재량규정 또는 완화하는 과도기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본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미 우리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앞에 구체적인 지난번의 안이 책상 위에 놓여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참조하시고, 단지 주요골자는 대행업체를 2개 업체로 하여야 한다는 한정규정을 2개 이상의 업체로 하여야 한다고 개정하고, 또 그 다음에 대행구역은 종로구 전체를 단일구역으로 한다는 강제규정을 구획된 지역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고 개정하며, 세번째로는 대행업자 선정시 담합 방지를 위하여 기존 참여업체 제한규정을 둔 바 여기에 일부 오해가 있어 본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 그 다음으로는 종로구에 거소를 둔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규정도 역시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부칙 조항에 시행규칙 제정 근거를 두었으나 본조에 중복되어 있어 삭제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 별첨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고서 진지한 토의 끝에 우리 종로구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구의원, 양심적이고 주민에 의한 구의원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이 안을 우리가 우리 의원직을 걸어놓고 주민들이 바라

는 바에 의한 개정을 해주실 것을 어조 높이 강조하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1995년 5월 9일

발 의 자 : 김현중의원 외4인

1. 제안이유

상기 조례는 '94. 7.30 의원 발의로 개정하였는 바 당시 개정 취지는 그동안 십수년간 정화조청소대행업이 독점체제로 운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요자인 시민에게 갖은 횡포와 불이익이 있다는 여론을 수렴하고 경쟁체제 도입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욕적인 취지로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에서만 의원 발의로 일대 혁신적인 개정을 한 바 있으나, 본 개정안이 정화조 청소행정의 일대 변혁이 초래되어 광역청소체제인 서울시 여건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집행부 의견(재의 요구)이 있었고 또 본 개정안 심의의결 과정에서도 소수 반대의견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기본 개정 취지는 유지하되 일부 강제규정 등을 재량규정 또는 완화하여 과도기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임.

2. 주요골자

가. 대행업체수를 2개 업체로 “하여야 한다”는 한정규정을 “2개 이상의 업체로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나. 대행구역은 종로구 전체를 단일구역으로 한다는 강제규정을 “구획된 지역단위로 분할할 수 있다”로 개정하며

다. 대행업자 선정시 담합 방지를 위하여 기존 참여업체 제한규정을 두었는 바 여기에 일부 오해가 있어 본규정을 삭제코자 하며

라. 종로구에 거소를 둔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규정도 역시 삭제코자 함.

마. 부칙 조항에 시행규칙 제정 근거를 두었으나 본조에 중복되어 있어 이를 삭제함.

3. 개정안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하게 할 때에는 지
역책임제에 의한 봉사의 질 향상을 위하여 2개
이상의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허가업자
(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서가 없거나 허가자
가 폐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단위 또는 도
로를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분할할 수
있다.

제10조제7항및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3항(규칙)을 삭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	제10조(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생략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하게 할 때에는 경쟁에 의한 봉사의 질 향상을 위하여 2개의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업자(이하 “대행 업체 및 대행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 게 하여야 한다. 다만 희망자가 없거나 계약한 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하게 할 때에는 지역책임제에 의한 봉사의 질 향상을 위하여 2개 이상의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허 가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 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자가 없거 나 허가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④ 생략	③~④ 생략
⑤대행구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체를 단일 구역으로 한다.	⑤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단위 또는 도로를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분할할 수 있다.
⑥생략	⑥생략
⑦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 를 정함에 있어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이미 서울특별시 전역에 걸쳐 1개 구역 이상 에 대행업을 하고 있거나, 그 업체가 내세운자 로 정황이 확인되는 대행업자는 담합을 방지 하기 위하여,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계약이 기체결된 경우에는 계약의 취소 또는 철회하여야 하고, 본사항은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⑦삭제
⑧구청장은 대행업자를 정함에 있어 동등한 자격의 경합이 있는 경우는 종로구에 거소를 둔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⑧삭제
부칙③(부칙) 본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③(삭제)

○委員長 羅在岩 金憲中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蔣昭秀 專門委員 蔣昭秀입니다. 1995년 5월 9일 金憲中議員님 외 4인이 발의하신 서울特別市鍾路區汚水·糞尿및畜産廢水の處理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는 네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가 대행업체수를 현재 2개 업체로 하여야 한다는 한정규정을 2개 이상의 업체로 한다고 개정을 하고, 두번째는 종로구 전체를 단일구역으로 규정하던 것을 구역을 수개로 분할할 수 있게 재량규정으로 개정을 하며, 세번째는 담합방지를 위한 기존 참여업체 제한규정을 두었었는데 그게 사회정의에 위배된다고 해서 그것을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로구 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규정도 역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처리 경위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994년 7월 30일 丁昌熙議員 외 5인의 의원님의 발의로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개정 취지는 그동안 정화조청소업을 독점체제로 운영하던 조례사항을 경쟁체제로 개정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의결을 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994년 의결된 개정안을 구청으로 이송했습니다. 그 이후에 1994년 8월 19일 구청으로부터 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9조에 의한 재의 요구입니다. 이 재의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의회에서 10일 이내에 휴회나 폐회기간을 제외한 기간입니다. 10일 이내에 재의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계류되어 오다가 1994년 12월 21일자로 구청에서 자진해서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이 5월 9일날 공포를 해서 지금 시행 단계에 있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1994년 8월 2일자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 쟁점사항에 대한 개정으로서 본 개정으로 재의 쟁점사항이 일부는 해소되었으나 대행업체수를 2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쟁점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쟁점 요인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뢰한 변호

사인 이상국 변호사와 또 구청에서 의뢰한 김구일 변호사 간에도 의견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에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첨부한 관련법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羅在岩 蔣昭秀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시민국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朴禹信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禹信委員 朴禹信委員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래 제정 목적이 1개 업체가 독점하느니 보다는 2개 이상의 업체로 해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 하에 이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종로구 전체를 단일구역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구획을 다시 그어서 동부니 서부니 그렇지 않으면 무슨 동은 어디라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 과연 이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목적에 합당하고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해가면서 대행업체들이 할 수가 있겠느냐, 다시 말씀드리어서 서로가 단일업체로 그 업체들이 전화나 이런 걸로 해서 간다면 모르겠으되 그렇지 않고 구획을 정해서 준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주무국장으로서는 괜찮겠느냐 하는 하나의 첫째 질문이고, 두번째로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대행업체를 2개 업체로 하여야 한다고 하는 규정을 다시 개정하는데 2개 이상의 업체로 하여야 한다고 하는 이 말이 하여야 한다고 하는 강제규정이 아닌가, 또는 만약에 한다면 하여야 한다는 것보다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2개 업체로 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강하지 않느냐, 기왕에 할 것 같으면. 그렇지 않다면 이 조례 제정이 만약에 저희가 이것을 해놓고 뒤에는 이게 나가서 다음 회기의 의원이 등단을 해서 이러한 법을 제정해서 저희가 합당하지 못한 조례를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서 해야 한다고 강제규정 보다는 2개 이상의 업체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정확하게 주무국장께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市民局長 金賢植 市民局長 金賢植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난 1995년 5월 10일자로 구의회 의장 명의로 공포된 종로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개정의 배경은 기히 공포된 내용입니다마는 본 내용이 시민행정위원회에서 논의 자체가 안된다는 것을 담당 국장으로서 섭섭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저희 구에서 기히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골자를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면 첫째, 조례 제10조제5항에 대행구역은 종로구 전체를 단일구역으로 한다는 규정은 대행구역을 단일구역으로 해서 경쟁체제가 될 경우 그 대행업체가 수익성이 없거나 차량 진입이 어렵고 여건이 나쁜 지역은 청소를 기피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고층빌딩 등 수익성이 좋은 지역만을 선별해서 청소를 하는 등 많은 불합리한 점이 예상되고 결국은 영세업체는 소멸하게 되므로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구획된 지역 단위로 분할할 수 있다는 지역책임제로 개정함을 저희들이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제10조제2항에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청소를 대행함에 있어서 경쟁에 의한 질 향상을 위해서 2개의 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두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영업허가권을 기속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서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2개 이상의 대행업체로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개정함으로써 위법 요소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는 조례 제10조제7항 및 제8항의 대행업자를 정함에 있어서 명시적인 제한규정을 두었는 바 이는 법 제35조제1항 및 제5항이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위배되므로 전문 삭제해서 위법 소지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뇨 및 정화조의 처리 업무가 수집, 운반은 구청에서 하고 본 업무 처리는 시에서 광역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역 청소행정상의 구조상 서울시 청소행정의 기본계획에 따를 수밖에 없고 자치단체의 구청장이 분뇨를 임의로 처리할 수 없는 현행 여건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憲中議員 議席에서-국장님! 잠깐만. 지금 우리 朴禹信委員長님께서 질문하신 답변과 지금 거기에 보충을 하는 답이 자꾸 나오고 있

는데 지금 우리 시간상, 회의 진행상 여러 위원님들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실 것 같으니까 질문해주신 요점만 간결하게 답변해 주세요. 해야 한다는 조항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의 답변만 요약해서 해주세요. 자꾸 길게 시간이 그렇고 한테 그 답변만 해주세요.)

○市民局長 金賢植 市民局長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전에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구청안이 본 시민행정위원회에 부의되지 않고 동일자로 제출된 안인 구청 의견이 아예 토의 자체도 되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시민국장으로서 구에서도 제출한안에 대해서 공동 심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在岩 지금 金賢植 市民局長이 구청안을 한 부씩 쥐서 설명하도록 하고 지금은 그 답변만, 朴禹信委員이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아시겠죠? ‘할 수 있다’에 대한 얘기.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市民局長 金賢植 시민국장이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 한 30년 동안에 저희들도 많이 법률 자문도 거치고 의회에서 충분한 법률 자문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청소대행업자 관계는 구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의회의 고유업무 영역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인 영업허가는.

(○金憲中議員 議席에서-委員長님! 우리가 의사진행은 의사진행대로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을 요청을 합시다. 지금 뭐냐면 엉뚱한 말을 늘어놓는 것은 모르는 얘기고 나중에 그런 얘기는 별도로 절충을 하든지. 왜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줘야 하는데 딴 말만 합니까?)

○委員長 羅在岩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朴禹信委員長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朴禹信委員長님이 말씀하신 2개 이상의 업체로 하여야 한도와 할 수 있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金賢植 市民局長 金賢植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청장의 고유 영업허가는 구의회에서 조례로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구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朴禹信委員 지금 말에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강제규정인데 상위법에 저촉이 없느냐 하는 것을 질의한 거고, 또 두번째로는 이 조례 제정 목적이 어떤 구역을 정해서 기왕에 만든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경쟁적으로 해서 구민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본래의 제정 목적하고 같아지느냐 하는 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탄 구청 안이고 그런 것은 모르겠고.

○市民局長 金賢植 시민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국장으로서 강제 기속규정을 '할 수 있다'로 구에서 자유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朴禹信委員 이것이 강제규정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 강제규정을 우리 구의회에서 개정을 하면 이것이 상위법에 아무런 하자가 없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탄 얘기가 아니고 이것만 다시 부탁드립니다.

○市民局長 金賢植 市民局長이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조례로서 대행업자를 규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구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기속하는 것이므로 상위법에 위배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羅在岩 예, 孫光一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孫光一委員 孫光一委員입니다. 왜 작년에 구청에서 철회한 이유는 뭐니까? 그러면 철회한 공무원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市民局長 金賢植 철회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孫光一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羅在岩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千相旭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千相旭委員 제안자이신 金憲中議員님께 질의를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제안자이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제안 이유에 보면 일부 강제규정 등을 재량규정으로 또는 완화하여 과도기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본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강제규정 등을 재량규정으로 완화한다고 하는 주요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개정(안)에 대해서 네 가지 사항을 완화하는 걸로 봅니다. 그런데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조례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

니다마는 2개 업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 강제규정으로 보셨는지 아니면 완화했다고 보시는지.

○金憲中議員 저는 완화했다고 보고 우리 구민이 절대적으로 2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해서 하는 것이 입찰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과거의 여론이나 현재의 구민의 여론이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탄 것은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종로에 거소를 둔 자라야 된다는 등등은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들끼리 이것은 너무 강제규정이 아닌가 해서 이번 안에는 전부 거기에 대해서 삭제했습니다. 기타 구청에서 요구한 대로. 그런데 또 한 가지 얘기하자면 지금 구청에서 상당히, 孫光一委員이 얘기하셔서 작년 12월달에 7월 30일날 통과가 된 것을 그냥 뒀다가 공포도 안하고 그냥 뒀다가 12월달에 가서 철회를 해버렸어요. 철회를 해버린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철회를 한 데 대해서 책임도 없고 책임을 질 사람도 없고 이제 와서 이것을 다시 강제규정이라고 하는데 절대 저는 전 주민의 요구요 전 서울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해요. 10년 이상이나 어떻게 한 개 업소에다 이렇게 주는 사항은 법원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탄 것은 다 안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2개 이상의 아까 朴禹信委員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2개 이상의 업체라야 된다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千相旭委員 局長님께 여쭙보겠는데 局長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2개 이상의 업체로 한다고 하는 조항은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말씀하셨지요?

○市民局長 金賢植 강제규정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거지요.

○千相旭委員 강제규정이라고 보십니까?

○市民局長 金賢植 네. 그렇습니다.

○千相旭委員 그러면 오수, 폐수, 분뇨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보면 區廳長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관련업체로 하여금 그 수집, 운반 또 처리를 대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區廳長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는데 그 조례는 누가 정합니까?

○市民局長 金賢植 議會에서 정합니다.

○千相旭委員 그렇지요? 議會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분뇨업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 위법에 위배된 게 없지 않습니까?

○市民局長 金賢植 그 포괄적인 내용은 議會에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경쟁체제로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지역체제, 옛날에도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보다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구의 고유 업무를 그대로 두시고 저희들이 경쟁체제로 구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단 하나 구의 고유한 행정 집행권까지 의회에서 기속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千相旭委員 그런데 경쟁체제를 앞으로 도입하겠다는 하는 그 뜻이 됩니까?

○市民局長 金賢植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많이 고심하셨겠지만 저희들도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경기도같은 데서는 여러 업체가 참여해 가지고 운반 수거량에 대해서 받도록 하는데 거기서 현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 하면 예를 들어 종로지역 같으면 좋은 빌딩이나 이런 업소에는 서로 덤핑을 해서 불는 사례도 있고 고지대는 돈을 더 붙여도 치우지 않아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복수경쟁체제를 지역별로 나누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하려면 전부 다해야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복수 경쟁체제로 하겠습니다.

○千相旭委員 그렇다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잖아요?

○市民局長 金賢植 단 하나 구에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재량권을 議會에서 그것까지 묶어 가지고 한다 하는 것은 안된다 이런 뜻입니다.

○千相旭委員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은 그 말이 그 말 같은 말 아닙니까?

○市民局長 金賢植 완전히 다릅니다. 전국 어느 시, 도에 가서 만약에 구에서 저희들이 잘못이 있어 가지고 議會에서 제의, 철회를 거쳐야 議長님 명의로 공포된 이런 조례가 거의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업무를 잘못 했음을 느낍니다. 조금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단

하나 좀더 시, 도에 걸쳐서 이거를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구청장의 영업허가권을 구의회에서 계속 이런 것까지 기속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예 기입니다. 그것을 구에서 최대한으로 질을 향상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千相旭委員 局長님! 제가 질문한 것은 국장님께서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상위법에 기속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 제19조1항을 보면 이 조항이 분명히 상위법에 기속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가…….

○清掃課長 姜漢洙 清掃課長이 보충답변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羅在岩 네. 보충답변하세요.

○清掃課長 姜漢洙 대행업 허가는 구의회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인데 영업허가권은 區廳長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조례로서 대행업자를 “2개로 정해야 한다” 하고 강제로 규정을 해 놓으면 영업허가를 2개 이상을 해야 한다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다.

○千相旭委員 아니 상위법에 하나로 한다는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清掃課長 姜漢洙 영업허가권이 區廳長의 고유 권한인데 그것을 기속하는 거지요. 조례에 따라서 허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합니다.

○千相旭委員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뭘 그래요? 법이 오수, 분뇨 처리 조례가 아니고 국가에서 정한 모법인데 법 제19조2항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 안의 분뇨를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區廳長 권한인데 이 경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장,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관련업자로 하여금 운반 처리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이 모법을 기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보는데 그런데 局長님과 課長님도 기속한다고 하니까 기속되면 이 수정안을 또 재수정해야 됩니다. 나는 기속이 안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清掃課長 姜漢洙 저희들이 보는 입장은 분명하게 허가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되는 겁니다.

○千相旭委員 그러면 저희들이 구청에 대해서

될 느끼느냐 하면 계속해서 한 업자로 하여금 오수, 분뇨를 처리하는 권한을 한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확고하다는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清掃課長 姜漢洙 저희들이 기존 업자를 보호하거나 그 사람들을 편을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다만 조례로서 그런 한정규정을 두게 되면 역으로 허가권을 한정하는 結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千相旭委員 사전에 우리 관계관들이 조례개정 수정안이 나오기 전에 이미 업자를 한 사람 더 선정하는 의지를 보여줬다면 이런 마찰은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 조례 하나, 글자 다섯 자를 두고 구청과 마찰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사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 또 십수년을 한 업자에게만 고정해서 집행권을 주다 보니까 서비스는 커녕 먼저 청소가 안 되고 오히려 우리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더럽히는 이런 행정이 계속 지속되어 왔고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단연코 조례가 있든 없든 간에, 영국같은 나라는 법이 없어요. 憲法이 없어요. 憲法이 없는 나라에서 가장 법을 잘 지키고 있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조례를 떠나서 住民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열심히 하겠습니까 하는 意志를 보였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면 계속해서 한 업자로만 주겠다 하는 그런 意志로만이 안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金賢植 市民局長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경쟁체제를 할 의사가 있습니다. 단 하나는 서울시에서도 '76년부터 '85년까지 이러한 경쟁체제를 운영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청소요금의 덤핑이라든지 또 부실청소로 인해서 住民의 민원 발생, 또 여러 가지 허가 내려면 업체의 영세화, 수금 기피 등 문제점이 많이 나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부 업체를 두둔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고,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기속한다 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구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더욱 연구를 해서 발생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님들이 적극적으

로 협조해 주시고 제게 한번 맡겨 주십시오.

○千相旭委員 제가 물은 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94년 12월 21일자로 제의 요구서를 철회할 때 그때 저희들이 구청 최고 간부하고 어떤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종로 22만 구민이 간절히 소망하는 바가 청소대행업자 한 사람이 장기간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다 이거 하나 공영체제로 못 돌리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추궁을 많이 했습니다. 범조례 이게 뭐가 필요하냐, 條例가 없더라도 區廳長 재량으로 요구해서 2개 업자를 해주시오 해서 2개, 3개 업자로 하는 것이 그것이 정도인데 그것을 왜 못했느냐 하고 추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條例로 정해서 하겠습니까 했는데 그 이후 5개월이 지나도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고 議會 條例만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따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겁니까? 5개월 동안 뭘 했습니까? 그러한 체제를 준비한 게 있으면 가져 오세요. 의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재수정해 드릴게요. 그동안 했다는 실적을 가져오세요. 2개 업자로 정하겠다는 근거를 가져오세요.

(○金憲中議員 議席에서-局長하고 清掃課長하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속기록에까지 나와 있어요.)

○市民局長 金賢植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는데 업자를 한 사람 더 늘리니까 또한 다수 업자가 참여해 가지고 양으로 해야 하느냐 이런 것을 검토를 했고 단 하나 제가 부임하기 전에 작년도 7월에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사와의 기간은 3년간으로 했습니다. 현재는 하나입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羅在岩 네. 孫光一委員! 질의하세요.

○孫光一委員 孫光一委員입니다. 千相旭委員님이 질의한 내용과 저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12월 21일 철회요구서를 해가지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공무원이 징계가 된다 뭐가 된다 했는데 공무원이 징계된 게 있습니까? 우리한테 사정만 했지 업자 선정을 안했다는 거는 만날 구청의 고유권한 고유권한 하는데 이것도 잘못됐다고 보고 또한 住民의 고발장이 들어왔어요. 거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안되잖아요. 고발장 들어온 걸 읽어드릴까요? 1차, 2차 들어왔는데 2차는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했어요. 또

한 가지는 지난날 청소업자가 대행을 하나를 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1당 가격 요금보다도 그 이상을 받는 업자 이야기를 지난날 구정질문 때도 했습니다. 우리 區廳長께서 꼭 2개 업자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했는데 또 5월 9일 議長이 공포한 데 대해서는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자꾸 이렇게 시시비비만 할 겁니까?

○市民局長 金賢植 저희들도 앞으로 일반 행정도 기업경영 행정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 委員님들도 검토가 되었을 줄로 압니다만 현행 민법상이나 법률상 그렇게 계약된 업자에 대해서 해지를 할 경우에는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고 피해배상 청구에 의해서 배상이 되니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단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미 3년간 계약된 데 대해서 해지를 할 때에는 그러한 손해배상을 적법할지라도 배상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羅在岩 네. 朴禹信委員! 질의하세요.

○朴禹信委員 朴禹信委員입니다. 청소대행업자를 2개 업체로 해서 경쟁하도록 하는 것은 그 업체들이 구민을 위해서 잘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정을 해달라고 하는 건데 역으로 얘기해서 청소업자들이 그동안 해온 행각을 보면 과연 그 사람들이 돈벌어먹기 위해서 그래서 한 거 아니냐, 2개 업체로 해도 마찬가지로라면 條例를 제정해줘야 별것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동안 정화조 청소를 해가는 업자들을 보면 그냥 액체만 가져가지고 체는 하나도 안 가져갑니다. 그러면 정화조 청소는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2개, 3개 해주면 그 사람들 먹거리만 늘려준다 이거예요. 그러한 문제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기왕에 하려면 어떻게 해야 양질의 서비스를 대행업체가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야지 2개 업체든지 3개 업체든지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구청에서 왜 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가 많이 나왔잖아요. 할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市民局長 金賢植 저희들 앞으로 기업 행정체제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단 하나 구청장의 고

유허가권은 그대로 두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委員長 羅在岩 委員님들! 흥분도 가라앉히고 좀더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한 30분간 정회를 했다가 1시에 속개를 해서 하는 게 어떨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宣布합니다.

(12時 31分 會議中止)

(13時 27分 繼續開議)

○委員長 羅在岩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在籍委員 11명 중 出席委員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침에 모두가 아주 진지한 질의를 해주시고 그에 따른 답변을 충실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봄이라 노곤도 하시겠습니까마는 우리 구 주민들을 위한 회의라서 열심히 나머지 토론과 표결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玄壽漢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玄壽漢委員 제안자이신 金憲中議員께 여쭙보겠습니다. 제10조2항 중간 부분에 2개 이상의 업체로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없다, 한가와 있다라고 그 차이이기 때문에 쟁점이 되고 다만 허가신청자가 없거나 허가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문구는 분명히 10조2항의 문구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혀 허가신청서가 없을 수도 있다고. 그것은 예측 불가능이고 예측이 어려운 거죠. 또 허가자가 폐업하는 경우도 생겨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허가신청이 들어왔다고 봤을 때 꼭 구청장이 해줘야 된다는 원칙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안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金憲中議員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 통념에 의한 입찰규정에 적용되는 거지 우리 조례로서는 우리 조례에 우리 조례 나름대로의 원칙을 두고서 개정하기 때문에 2개 업자 이상을 하여야 한다고 해야 종로구민이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개 업자 이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독소조항도 전부 삭제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는 이것은 전부

아까 말씀과 같이 여러 가지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라야 된다는 등의 그런 조항은 완전히 삭제하고 또 구에서 구 행정 계통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안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玄壽漢委員 종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것을 질문드릴게요. 2개 이상의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2개 이상 할 수 있다고 하면 2개나 3개, 4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쟁점은 만약에 안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金憲中議員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넣는 거지 안할 수도, 안해도 된다는 이러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꼭 2개 업자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이상'을 넣는 것입니다. 그 문자는 '이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두 글자가 문제이지.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볼 때에도 2개 이상 업체에 대해서 하라고 조례를 개정해야 법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순리라고 보기 때문에 꼭 2개 업자 이상을 하여야 된다는 것을 넣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玄壽漢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장한테 여쭙보겠는데 허가신청업자의 허가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우리 구청장은 꼭 해줘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해줘도 될 수 있는 건지 꼭 신규업자가 여러 가지 조건을 구비해 가지고 해달라고 하면 꼭 반드시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지 또 안해줄 수도 있는지, 지저분한 일을 하는 것을. 이게 힘들어서.

○委員長 羅在岩 시민국장! 답변하세요. 국장님이 답변하기 뭐하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市民局長 金賢植 市民局長 金賢植입니다. 지금 제10조에 2개 업자로 하여야 한다는 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법적으로 기속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안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좀더 첨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 구청에서 제출한 안을 위원님들이 아마 검토하였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상정이 안되었습니까라는 저희들이 사실은 구의회의 뜻도 존경을 해서 대행업자를 2개 이상의 업자로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구의회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낸 것입니다.

○玄壽漢委員 왜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지금 신규업자가 허가신청을 요구했을 때 구청장이 꼭 해줘야 되느냐, 안해도 되느냐, 안해줄 수도

있느냐, 꼭 해줘야만 되느냐, 신규업자의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몰았지 엉뚱한 소리를 해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문제될 게 없네. 되었습니다.

○委員長 羅在岩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때 제안자가 필요하다면 제안자는 제안서에 임해주실 거고 나머지 위원들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孫光一委員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孫光一委員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羅在岩 孫光一委員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한다고 했는데 또 다른 토론이 있으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朴禹信委員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朴禹信委員 朴禹信委員입니다. 아까 질의시간에도 얘기가 되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분뇨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구민을 위한 청소대행업자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업자를 위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되겠다,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어도 시행하는 종로구청에서 행정하는 분들이 이것을 잘 하지 않고 조례의 본뜻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가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서 孫光一委員의 원안대로 통과를 동의하는 데 대해 재청하면서, 시행하는 시민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어떻게 하면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행업자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구의원들의 사실상의 본뜻을 헤아려서 시행하는 데 착오가 없으시도록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在岩 朴禹信委員께서 孫光一委員이 제안한 원안 통과에 양질의 서비스를 행정측에서 선정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달라는 것을 첨부하면서 토론해 주셨는데 또 토론하실 분이 없습니까? 재청까지 들어온 거죠. 토론 없습니까?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千相旭委員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千相旭委員 지금 孫光一委員님의 원안 동의안과 재청을 朴禹信委員께서 해주셨는데 이미 공포된 사항이 아닙니까? 이 조례가 공포된 사항

이기 때문에 본조례 개정(안)이 가결되면 이 시간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구청에서 어떤 행정을 집행하는 측에서 볼 때는 조례는 우리 지방정부의 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장 내일부터라도 이 조례대로 시행해야 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준비기간을 구청 측에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경과조치 같은 것을 삽입해서 금년 말까지라도 경과조치를 줘서 본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경과조치를 삽입하는 걸로 이렇게 동의 측에서 받아주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구청의 행정측에서 절차를 밟는데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동의측에서 받아주신다면 동의안에 첨가해서 삼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在岩 두 가지가 첨부되네요. 행정측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신중을 기해서 해달라는 얘기하고 너무 기일이 촉박하니까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孫光一委員 議席에서-이미 이것이 5월 9일자로 공포가 된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자 이것은 시한이 너무……)

(○千相旭委員 議席에서-개정(안)이 통과가 되어야지. 이미 공포된 것을 다시 개정하는 거니까.)

(○金憲中議員 議席에서-제안자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좋은 말씀인데 이미 이것이 어제 공포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철회를 했기 때문에 철회한 데 대한 문제가 상당히 큰 거예요. 지금 구청에서는 그 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미 구청에서는 작년 12월달에 철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다시 거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상'이라는 두 글자 가지고서 여태까지 시간을 소비했는데 이미 구청에서 철회를 하니까 의장 직권으로서 몇개월 기다리다 소식이 없으니까 5월 9일날 공포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공포를 했으면 그 공포에 따르면 될텐데 사실상 내용적인 얘기를 하자면 구청이 잘못하면 공무원이 견책이라도 인책을 받을까봐 합의를 이루었는데 그 합의라는 것이 '이상'이라는 것, 이게 2개 이상이라는 것뿐이지 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청의 시녀가 되어 가지고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 말씀은 구청의 시녀가 되어서 해달라고 하는 대로 해줄

수가 없고 어쨌든 이 조례는 이미 통과가 된 조례로, 구청을 생각하고서 이것을 시정한 데 불과하고 구청 당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는지 이렇게 해줘도 불만이 있는 건지 이런 걸로 봐서 이것은 우리가 우리 의회의 입장도 있고 이렇게 때문에 의회는 의회대로의 입장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것을 시행을 해야지 그냥 이것을 파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하자고 하면 엄청난 물의가 일어나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진정이나 탄원이나 고발, 고소 사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의회도 얼굴을 쳐들 수가 없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오늘 원안대로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나중에 법적으로 하고.)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羅在岩 예, 孫光一委員 말씀하십시오.

○孫光一委員 왜냐하면 우리 千相旭委員님의 좋은 말씀인데 우리 朴禹信委員님이 참 좋은 말씀 해주셨고, 또 우리가 다 구청도 공무원이 하나라도 잘못되면 안되고 우리 주민들이 의회에 나와서 우리를 쳐다보는 22만이라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의회의 대표성을 지닌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그것을 공포를 해도 작년 12월이면 5월 9일 했으니까 벌써 몇개월 동안 참고 기다려왔는데 먼저 千相旭委員님이 여태까지 뭘 했느냐, 이때까지 한 것을 가져오라고까지 했는데 이것을 원안대로, 여러분들 좋은 말씀이고 좋은 의견이시지만 그냥 원안대로 발의한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개월 동안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를 해줄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羅在岩 예, 丁昌熙委員 말씀하십시오.

○丁昌熙委員 회의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회의진행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해서 숙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羅在岩 예, 玄壽漢委員 말씀하십시오.

○玄壽漢委員 제가 千相旭委員의 발언에 동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행정부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되 부칙에다 경과기간을 더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羅在岩 예, 우리 金憲中 제안자의 말씀도 듣고 우리 孫光一委員의 동의 발언, 朴禹信委員의 양질의 서비스를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해달라고 하는 좋은 말씀, 그 다음에 千相旭委員의 너무 기일이 급박하니 준비기간으로 1996년 1월 1일까지 경과조치를 받아서 시행일자를 넣자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孫光一委員, 朴禹信委員, 千相旭委員의 토론이 각각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뒤에 발언하신 千相旭委員의 기일이 조금해서 1996년 1월 1일 시행하자는 경과조치와 그 다음에 朴禹信委員의 행정측 양질의 서비스 선정을 위해 신중을 기해달라는 것, 그리고 원안대로 통과해달라는 孫光一委員 세 안이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표결을 하겠는데.

(○丁昌熙委員 議席에서-제가 회의진행 발언으로 5분간 정회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여쭙봐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羅在岩 표결하기 전에 5분간 정회를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5분간 정확하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 50分 會議中止)

(13時 55分 繼續開議)

○委員長 羅在岩 재적위원 11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千相旭委員이 동의안에 기일이 조금해서 1996년 1월 1일까지 경과조치를 시행하자고 하는 토의 발언을 해주셨고, 또 朴禹信委員께서는 행정측이 양질의 서비스를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해달라는 동의 재청 발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孫光一委員께서는 원안대로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자고 하는 안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표결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어떤 방법론이 또 있겠습니까?

니가?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千相旭委員 議席에서-孫光一委員님의 동의안에 첨가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동의측에서 3개월이면 경과조치를 조례 10조2항의 부분에 대해서만 3개월의 경과조치를 유예하는 걸로 해서 동의측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羅在岩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요한 일이고 해서 우리가 마지막 지금 마무리로 시민행정위원회가 우리 종로 주민들에게 주는 선물인 것 같은데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千相旭委員께서 1996년 1월 1일까지 경과조치를 시행일자 부칙에다 넣는 안을 3개월 앞당겨서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일자에 부칙으로 넣는 수정동의안을 내주셨습니다. 이 안을 놓고 표결하겠습니다.

우선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14시 00분 舉手表決)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 다만 제10조제2항의 시행시기를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전원 일치의 찬성을 해주셔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우리 시민국장님! 마음에 내키는 대로 잘 안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중을 기해서 잘 부탁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2. 서울特別市鍾路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14시 02분)

○委員長 羅在岩 의사일정 제2항 서울特別市鍾路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金賢植 市民局長!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金賢植 市民局長 金賢植입니다. 우리 종로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

는 羅在岩 市民行政委員長님을 비롯해서 각 委員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特別市鍾路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배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는 바 이에 사용되는 관급 규격봉투의 종류를 다양화하는 등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함으로써 본 제도의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조례 제14조에 규정된 규격봉투의 종류를 기존의 가정용, 사업장용, 공공용봉투 등 세 종류에서 특수규격봉투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수규격봉투는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중 일반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각종 유리 제품, 재활용을 하지 못하는 철제품, 화분, 돌 등 무거운 폐기물을 담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재질은 마대로 하고자 하며, 용량은 50ℓ 용으로 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15조에 규정된 규격봉투의 용량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기존의 5ℓ, 10ℓ, 20ℓ, 50ℓ, 75ℓ, 100ℓ의 여섯 종류에서 30ℓ를 추가하고자 하며, 공공용봉투의 용량도 기존의 세 종류인 50ℓ, 75ℓ, 100ℓ에서 10ℓ, 20ℓ용을 추가하여 다양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량제 실시 이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거의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4개월 동안 종량제 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사항들입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종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출일자 : 1995. 4.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제안이유

'95. 1. 1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전면시행되고 있는 바, 이에 사용되는 관급 규격봉투의 종류를 다양화하는 등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함으

로써 본 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규격봉투를 일반규격봉투·특수규격봉투 및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여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중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것은 특수규격봉투에 담도록 함(안 제14조).

나. 일반규격봉투의 용량을 30ℓ형을 추가하고, 특수규격봉투의 용량은 50ℓ형으로 하며 공공용 봉투의 용량도 다양화함(안 별표 2 및 별표 3).

다. 규격봉투의 사양 중 일부 사항은 지역실정에 맞게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

나.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규격봉투의 종류 등) ①규격봉투는 일반 규격봉투, 특수규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②일반규격봉투에는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되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일반가정용봉투에,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일반사업장용봉투에 담는다.

③특수규격봉투에는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중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일반 폐기물을 담되 가정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은 특수가정용봉투에,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은 특수사업장용봉투에 담는다.

④공공용봉투에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담는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규격봉투의 색깔, 규격 및 재질 등) 규격봉투의 색깔, 용량, 규격, 사양, 재질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격봉투의 색깔은 일반규격봉투 및 특수규격봉투 중 가정용봉투는 흰색(반투명), 사업장용봉투는 오렌지(주황)색으로 하고, 공공용봉투는 옅은 청색으로 한다.
2. 규격봉투의 용량별 용도는 별표3과 같다.
3. 규격봉투의 종류, 재질, 구조, 모양, 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KS규격 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 구조, 치수 및 봉투의 표시는 자치구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받을 때 제15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 완료 후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작 검수한 규격봉투는 가능한한 당일 해당 동사무소 및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인계하고 인수한 동장 및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는 이를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동장 및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는 인수한 규격봉투 중 일반규격봉투 및 특수규격봉투를 구청장이 판매하는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②공공용봉투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용으로 필요할 때 동장이 필요량을 사용한다.

③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수수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일반규격 가정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매월 60ℓ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규격봉투 가격(제11조제2항관련)

(일반규격봉투 가격)

구 분	가 정 용	사 업 장 용
5 ℓ	70원	
10 ℓ	140원	
20 ℓ	260원	290원
30 ℓ	400원	430원
50 ℓ	640원	700원
75 ℓ		1,050원
100 ℓ		1,400원

(특수규격봉투 가격)

구 분	가 정 용	사 업 장 용
50 ℓ	790원	850원

(별표 3) 봉투용량별 용도(제15조제2호관련)

용량(ℓ)	용 도
5	일반가정용
10	일반가정용, 공공용
20	일반가정 및 사업장용, 공공용
30	일반가정 및 사업장용
50	일반가정 및 사업장용 특수가정 및 사업장용, 공공용
75	일반사업장용, 공공용
100	일반사업장용, 공공용

(다음 「페이지」에 계속)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14조(규격봉투의 종류 등) ①규격봉투는 가정용봉투, 사업장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②가정용봉투에는 가정폐기물을, 사업장용봉투에는 사업장폐기물을 담고 공공용봉투에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신설〉 〈신설〉	제14조(규격봉투의 종류 등) ①규격봉투는 일반규격봉투, 특수규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②일반규격봉투에는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되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일반가정용 봉투에,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일반사업장용 봉투에 담는다. ③특수규격봉투에는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중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일반폐기물을 담되 가정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은 특수가정용봉투에,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은 특수사업장용봉투에 담는다. ④공공용봉투에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담는다.	
제15조(규격봉투의 색깔·규격 및 재질 등) 규격봉투의 색깔·용량·규격·사양·재질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격봉투의 색깔은 가정용봉투는 흰색, 사업장용봉투는 오렌지(주황)색, 공공용봉투는 옅은 청색으로 한다. 2. 규격봉투의 용량별 규격 및 용도는 별표3과 같다. 3. 규격봉투의 사양은 별표4와 같다. 4. 규격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하되 그 밀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규격봉투의 색깔·규격 및 재질 등) 규격봉투의 색깔·용량·규격·사양·재질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격봉투의 색깔은 일반규격봉투 및 특수규격봉투 중 가정용봉투는 흰색(반투명), 사업장용봉투는 오렌지(주황)색으로 하고 공공용봉투는 옅은 청색으로 한다. 2. 규격봉투의 용량별 용도는 별표3과 같다. 3. 규격봉투의 종류·재질·구조·모양·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KS규격 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구조·치수 및 봉투의 표시는 자치구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제17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받을 때 제15조제1호내지 제4호 및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받을 때 제15조제1호내지 제3호 및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현행	개정안	비고																																													
③제작 접수한 규격봉투는 가능한한 당일 해당동사무소 및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인계하고 이를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 동장 및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는 인수한 규격봉투 중 <u>가정용봉투 및 사업장용봉투</u>를 구청장이 판매하는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②공공용봉투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용으로 필요할 때 동장이 필요량을 사용한다. ③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 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제27조(수수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u>가정용봉투</u>를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매월 60ℓ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별표 2) 규격봉투 가격 (제11조제2항관련)	③제작 접수한 규격봉투는 가능한한 당일 해당동사무소 및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인계하고 이를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 동장 및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는 인수한 규격봉투 중 <u>일반규격봉투 및 특수규격봉투</u>를 구청장이 판매하는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②공공용봉투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용으로 필요할 때 동장이 필요량을 사용한다. ③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 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제27조(수수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u>일반규격 가정용봉투</u>를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매월 60ℓ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별표 2) 규격봉투 가격 (제11조제2항관련) (일반규격봉투 가격)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가정용</th><th>사업장용</th></tr> </thead> <tbody> <tr> <td>5ℓ</td><td>70원</td><td></td></tr> <tr> <td>10ℓ</td><td>140원</td><td></td></tr> <tr> <td>20ℓ</td><td>260원</td><td>290원</td></tr> <tr> <td>50ℓ</td><td>640원</td><td>700원</td></tr> <tr> <td>75ℓ</td><td></td><td>1,050원</td></tr> <tr> <td>100ℓ</td><td></td><td>1,400원</td></tr> </tbody> </table>	구분	가정용	사업장용	5ℓ	70원		10ℓ	140원		20ℓ	260원	290원	50ℓ	640원	700원	75ℓ		1,050원	100ℓ		1,400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가정용</th><th>사업장용</th></tr> </thead> <tbody> <tr> <td>5ℓ</td><td>70원</td><td></td></tr> <tr> <td>10ℓ</td><td>140원</td><td></td></tr> <tr> <td>20ℓ</td><td>260원</td><td>290원</td></tr> <tr> <td>30ℓ</td><td><u>400원</u></td><td><u>430원</u></td></tr> <tr> <td>50ℓ</td><td>640원</td><td>700원</td></tr> <tr> <td>75ℓ</td><td></td><td>1,050원</td></tr> <tr> <td>100ℓ</td><td></td><td>1,400원</td></tr> </tbody> </table>	구분	가정용	사업장용	5ℓ	70원		10ℓ	140원		20ℓ	260원	290원	30ℓ	<u>400원</u>	<u>430원</u>	50ℓ	640원	700원	75ℓ		1,050원	100ℓ		1,400원	
구분	가정용	사업장용																																													
5ℓ	70원																																														
10ℓ	140원																																														
20ℓ	260원	290원																																													
50ℓ	640원	700원																																													
75ℓ		1,050원																																													
100ℓ		1,400원																																													
구분	가정용	사업장용																																													
5ℓ	70원																																														
10ℓ	140원																																														
20ℓ	260원	290원																																													
30ℓ	<u>400원</u>	<u>430원</u>																																													
50ℓ	640원	700원																																													
75ℓ		1,050원																																													
100ℓ		1,400원																																													

현행				개정안		비고	
(별표 3) 봉투용량별 규격 및 용도 (제15조제2호관련)				(특수규격봉투 가격)			
				구분	가정용		사업장용
				50ℓ	790원		850원
				(별표 3) 봉투용량별 용도 (제15조제2호관련)			
용량(ℓ)	규격 (가로×세로)cm	두께(mm)	용도	용량(ℓ)	용도		
				5	일반가정용		
5	26×31	0.020	가정용	10	일반가정용, 공공용		
10	33×40	0.020	가정용	20	일반가정 및 사업장용, 공공용		
20	41×49	0.025	가정용 사업장용	30	일반가정 및 사업장용		
50	56×67	0.030	가정용	50	일반가정 및 사업장용		
			사업장용		특수가정 및 사업장용, 공공용		
			75	일반사업장용, 공공용			
75	64×77	0.035	사업장용 공공용	100	일반사업장용, 공공용		
100	71×85	0.040	사업장용 공공용				

○委員長 羅在岩 金賢植 市民局長! 수고하셨습니다.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蔣昭秀 專門委員 蔣昭秀입니다. 1995년 4월 14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나무가지나 토석 등 비닐봉투에 담기가 곤란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마대형 특수규격봉투 제작과 용량을 다양화하기 위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개정 내용은 특수규격봉투 제작가격 설정, 기존 봉투규격 여섯 종류 외에 30ℓ를 추가하여 규격을 다양화하는 그런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종량제용 봉투와 관련된 민원을 수렴하여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규격봉투 중에서 30ℓ를 더 추가하여 다양화하고 특히 마대용 특수규격봉투를 제작 보급함은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羅在岩 蔣昭秀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千相旭委員 질의하십시오.

○千相旭委員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민원을 수렴하는 차원이고 또 용량 규격을 다양화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본개정(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을 동의합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羅在岩 예, 朴禹信委員 말씀하십시오.

○朴禹信委員 千相旭委員의 동의안에 재청을 하면서 1월에서부터 4개월 판매를 했는데 그게 얼마나 되었는지 이 제제에 조례하고는 별 관계가 없지만 규격봉투 제작하는 비용은 얼마 들어가고 현재 판매액은 얼마인지 대략해서 얼마인지 좀 해주세요.

○清掃課長 姜漢洙 清掃課長 姜漢洙입니다.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청소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 들어서 총 규격봉투를 제작한 것이 1,665만 6,000매를 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1,064만매를 각동에 보급했고 나머지

600만매는 저희 구청에서 현재 보관 중에 있습니다. 각동에 공급된 1,064만매 중에서 그동안 각 판매소에서 판매되어서 저희들한테 수입으로 잡힌 금액은, 이것은 통계상 3월 31일 현재의 통계입니다. 총 금액으로는 4억 7,120만원이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총 제작하는 데 소요되었던 비용은 1,665만 6,000매를 만드는데 4억 7,303만 6,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구청에 남아있는 600만매하고 각동에 보급된 것도 잔량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朴禹信委員 고맙습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羅在岩 예, 丁昌熙委員 질의하십시오.

○丁昌熙委員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특수규격봉투 가격이 50ℓ 가정용은 790원, 사업장용은 850원인데 제작단가가 특수규격봉투는 얼마고, 일반규격봉투 50ℓ의 제작단가는 얼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清掃課長 姜漢洙 지금 일반규격봉투 제작가격은 기히 조례로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가정용은 640원, 사업장용은 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수규격봉투 금액 산정은 가정용 50ℓ는 790원이고 사업장용은 50ℓ를 85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 산정 내역은 기존의 비닐봉투보다는 약간 상회합니다라는 서울시 본청에서 각 구청에 시달한 지침의 내용 중에서 최소가격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丁昌熙委員 제작단가를 물었습니다.

○清掃課長 姜漢洙 제작단가는 매당 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수규격봉투 제작단가가 비닐봉투와의 차액이 제작단가에 차액이 있고 순수 수수료나 판매이익에 변함이 없습니다. 제작비만 차액이 있어서 기존의 50ℓ짜리가 가정용 640원, 특수규격봉투 가정용이 790원이니까 15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丁昌熙委員 제작 비용이 50ℓ는 매당 얼마고 특수규격봉투 50ℓ는 얼마인가 그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다른 말은 놔두고.

○清掃課長 姜漢洙 그러니까 일반규격봉투 제작단가가 50원이고 특수규격봉투 제작단가가 200원으로 된 것입니다.

○丁昌熙委員 지금 판매가격에 비해서 제작 비용이 10분의 1도 제대로 안되는데 어떻게 판매 가격하고 제작 비용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이 나

왔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清掃課長 姜漢洙 그것은 현재 공급된 잔량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구청에 있는 것과 각동에 보급한 1천매 중에서 판매되지 않은 부분은 아직 수입으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丁昌熙委員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골목길 청소를 전부 기피합니다. 행인들이 어질러놓은 쓰레기를 청소하게 되면 내가 산 규격봉투에 담지 않으면 무단투기로 해서 벌칙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지금 골목 내집 앞 쓰는 미풍양속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공용 쓰레기봉투가 내집 앞을 열심히 잘 쓰는 사람들에게 각동의 동장님들이 파악을 해서 공용 쓰레기봉투를 적절하게 보급해서 골목길 청소에서 나오는 쓰레기 수거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안되고 있는 사항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羅在岩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우리 千相旭委員이 동의 발언을 해주셨고 朴禹信委員께서 재청까지 끝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 여러분! 정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작성,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13分 散會)

○出席委員 7人

羅在岩 丁昌熙 千相旭 玄壽漢
朴禹信 金憲中 孫光一

○出席 專門委員

蔣昭秀

○關係公務員

市民局長 金 賢 植
清掃課長 姜 漢 洙